

2017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(자유)과제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은 2017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자유과제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07. 24.

1. 사업목적

- ICT 융복합 기반 스포츠산업 고부가가치 기술개발
-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용품개발,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
-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(경기)장비 개발 및 스포츠 취약 계층(여성, 유아, 장애인, 고령자 등)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보조기술 개발

2. 사업내용

-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
- 세계적 스포츠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스포츠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지원
- 스포츠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확보를 위한 스포츠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지원

3. 지원과제 및 내용

- 과제구분 : 자유과제 1개
- 지원규모 : 2.45억 원 이내

구분	지원 분야	지원금액	기간	선정	주관기관
자유 과제	스포츠산업 기술개발(R&D) 분야 (예: 용품, 서비스, 융복합 등)	2.45억 원 이내	1년 이내	1개	제한없음

※ 연구개발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작성 요망(ex ⇒ 2017. 09. 01 ~ 2018. 08. 31)

※ 영리기관(기업) 참여 필수

4. 지원조건

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

구분	참여기업의 유형	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	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비율
1개	대기업	연도별 50% 이내	연도별 50% 이상
	중견기업	연도별 60% 이내	연도별 40% 이상
	중소기업	연도별 75% 이내	연도별 25% 이상
2개	중소기업+중견기업	연도별 60% 이내	연도별 40% 이상
	중소기업+중소기업	연도별 75% 이내	연도별 25% 이상
3개 이상	중견기업 비율이 2/3 이상	연도별 60% 이내	연도별 40% 이상
	중소기업 비율이 2/3 이상	연도별 75% 이내	연도별 25% 이상
그 밖의 경우		연도별 50% 이내	연도별 50% 이상

※ 총 연구개발비 = 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

민간부담비율

참여기업유형	현금부담 비율	현물 허용범위
중소기업	민간부담금 총 10% 이상	- 인건비(제한없음) - 연구장비재료비(제한없음)
중견기업	민간부담금 총 13% 이상	- 인건비(현물부담액의 70%이내) - 연구장비재료비(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%이내)
대기업	민간부담금 총 15% 이상	- 인건비(현물부담액의 50%이내) - 연구장비재료비(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%이내)
비영리법인	현금부담 불가	- 현물부담 불가

※ “참여기업”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(영리법인)을 말함 (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(비영리법인)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)

※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(현물+현금)을 부담함 (ex : 대학, 국공립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물부담 불가)

※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 기준을 적용

※ 기업분류

-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따른 기업임
- 중견기업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(중소기업·대기업이 아닌 기업임)
- 대기업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
-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

5. 신청자격(주관연구기관)

- 국·공립 연구기관,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
- 과학기술분야 「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
-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(법인)
 - *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,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
 - *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가능(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)
- “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”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)

6.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

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사전분석의 우수성	사업목적 부합성, 결과물 제시의 명확성,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	20
개발계획의 우수성	개발목표 적절성·구체성·명확성,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및 정량성과목표의 타당성,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, 개발방법, 일정계획의 타당성, 제시된 연구단계 주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우수성, 예산계획의 적절성	50
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	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, 구체적 근거제시, 대상고객 제시의 명확성, 경제적·과학기술적 파급효과	30

※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대상이며, 경합 시 최상위점수 획득과제 지원

선정절차

- 공고 → 개발계획서 접수 → 사전(서류)검토 → 발표평가 대상 통보 → 평가위원회(PT평가) → 심의위원회 → 최종결과 확정(전문기관장) → 신규과제 확정 통보 → 개발계획서 수정·보완(예산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) →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
- ※ PT평가는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

가산점 부여 :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

- 산·학, 산·연 또는 산·산 공동개발과제(1점)
-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(3점)
-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(3점)
-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"우수과제"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3점)
-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,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(3점)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3점)
-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'우수과제'로 평가된 경우(1점)
- ※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,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

감점 부여 :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

-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"실패과제"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(3점)
-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(3점)
-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(3점)
-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(3점)

7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

- 공고기간 : '17. 07. 24(월) ~ 08. 24(목) 15:00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(e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)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
- ※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함

○ 온라인 신청 : e-나라도움시스템(www.gosims.go.kr)

공공기관(대학, 비영리기관 등)	민간(영리기관)
회원가입	회원가입
회원가입(사용자 등록 등) 및 권한신청등록 [업무매뉴얼]을 참고하여 기관권한관리자 신청	-
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, 공통관리-사용자권한-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/ 조직탭 /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(자동승인) (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)	공통관리-사용자권한-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/ 조직탭 /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(자동승인) (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)
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사업신청-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·제출	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사업신청-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·제출

※ 회원가입 및 과제신청시 애로사항은 e-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 문의(10. 문의처 참조)

○ 오프라인 신청

- 오프라인신청 및 자료제출 : 현장방문 신청·접수 및 관련자료 오프라인 제출

※ 제출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(공릉동) 별관(스포츠산업 지원센터) 2층(산업기술팀)

※ 오프라인신청 및 자료제출은 접수마감일 15: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(15:00 이후 사무실 입장 및 신청제출 불가)

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(NTIS : <http://www.ntis.go.kr/>)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(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)를 발부받을 것(필수)

※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~2일전에 신청·접수완료 요망

□ 제출서류

○ 신청공문(주관연구기관 장 명의) 1부

○ 연구개발계획서, 과제요약서(전자파일 usb 제출)

⇒ 개발계획서의 1. 기술개발의 필요성, 2.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

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

※ 사전(서류)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(PT) 실시 전 책자(제본) 10부 제출

○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
○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(성과계획서), 3(참여의사확인서), 4호(위임장)

○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((세부)주관연구기관, 해당시)

○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((세부)주관연구기관, 해당시)

○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각 1부

○ 각 기관별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('16년도) 및 현물출자(연구장비) 증빙자료

※ 현물출자 증빙자료 :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, 자산대장 리스트 등

○ 재학증명서 (학생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)

○ 주관기관(영리법인인 경우), 참여기업(영리법인인 경우), 위탁연구기관(영리법인인 경우)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(국세청 신고기준)

(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) 각 1부

※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,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하며 국세청 신고·완료된 2016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

○ 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), 지방세 납세증명서,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 각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제출)

※ 비영리법인, 공기업,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제출

○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각 1부

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)

○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(장비도입 관련 해당시) 각 1부.

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)

※ 3천만원이상 ~ 1억원미만,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(시제품 제작 포함)

8. 선정(향후)일정

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, 현장실태조사(필요시) : '17. 9월초 ~9월말

선정평가· 선정심의위원회 : '17. 9월말~ 10월 초

연구개발계획서 수정·보완 : '17. 10월 중순

협약체결, 지원금 지급 : '17. 10월 말

※ 향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9. 유의사항

○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,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,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,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,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·규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

※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, 수행기관의 책임임

○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

○ 협약체결 후, 정부(기금)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(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)을 주관기관, 참여기관 각각 1부씩 협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

(민간부담금 중 현금(영리기관 부담 분)으로 사용)

*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(지원금)지급각서로 대체

-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%, 참여연구원은 10%이상 반영(필수)
- 연구장비(기자재 등)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%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(구입금액이 아님)
(ex : 구입금액이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,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)
- 아래의 경우(신청마감일 현재)에는 평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,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

1.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4.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
5.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

- 신청하고자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,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
-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중인 경우(참여제한 등)
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 및 그 대표, 연구책임자 등)
-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(파산),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, 지방세·국세 체납 등의 경우
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 및 그 대표, 연구책임자 등)
 - ※ 비영리기관, 공기업,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
-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부채비율이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일 경우
 - ※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(비영리기관은 제외)
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의 경우
- 국세청 신고·완료된 2016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
- 관련자료(연구개발계획서, 각종 증빙자료 등)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
- 주관연구기관, 참여기관, 위탁연구기관,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접

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
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-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,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(시제품 제작 포함)
 - ※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
- 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(시제품 제작 포함)
 - ※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임
- 정부지원금 및 연구개발기간(지원기간)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
-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변동 가능하며, 단독접수시 재공고(1회) 실시
- 과제종료후,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
 - 중소기업 : 지원금의 10%, 중견기업 : 지원금의 30%, 대기업 : 지원금의 40%
 - 징수기간 및 방법 :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/ 현금 납부
 - ※ 기술료 감경

구	분	감 면 기 준
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		정액기술료의 40%
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		정액기술료의 30%
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		잔여 정액기술료의 20%
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		잔여 정액기술료의 10%

○ 최종보고서 공개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,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,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근거에 따라 연구개발 종료 후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국가R&D보고서 등록관리 홈페이지에 공개됨.

※단,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, 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을 받아 공개유보 가능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제18조(연구개발성과의 공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·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③ 생략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: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
2.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3.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
10. 보안등급 분류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.
-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·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11. 문의처

-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산업기술팀(☎ 02-970-9690)
- 온라인 신청 문의처 : 1670-9595(e-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(www.ntis.go.kr),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,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spo.or.kr>),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www.sports.re.kr>),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pis.kspo.or.kr>) e-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의 공고문 및 관련규정(지침) 참조

12. 첨부서류

- 관련자료 및 양식
 - e-나라도움시스템 보조사업자 매뉴얼
 - 연구개발계획서 및 과제요약서(양식), 참여제한사항 자가 체크리스트(양식)
 -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(장비도입 관련 양식)
 - e-나라도움시스템 회원가입(사용자 등록 등) 및 권한신청등록 업무매뉴얼
- 관련규정 및 지침
 - 과학기술기본법,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,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
 -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

